

物質特許導入 무엇이

國際動向과 問題點을 集中

最近들어 우리나라에 物質特許를 導入하라는 美國의 壓力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美國은 지난 81년에 서울에서 열린 韓·美 商工長官會談에서 物質特許 導入을 要請하면서 부터 계속 壓力을 가해오고 있다.

즉 지난 83년에 열렸던 韓·美工業所有權會談에선 物質特許를 導入하지 않으면 技術移轉을 해줄 수 없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워커 駐韓 美國대사까지 합세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美議會를 통과한 GSP (一般特惠 關稅制度) 法案은 그 受惠 對象을 해당국내에

서 物質特許를 위시한 知的所有權保護와 연계시켰으며,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 經濟協議會에서도 物質特許導入을 強力하게 要請해 왔다.

한마디로 美國의 物質特許 導入 壓力은 執拗한 것이다.

이 때문에 政府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與件으로 보아 당장 導入이 不可能한게 事實이지만 언제까지나 美國의 壓力을 회피할 수 없는 立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0年代 導入이 거의 確定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 最近 貿易장벽

I 物質特許와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物質特許 除外하면 거의 完璧

知的所有權과 物質特許의 關係

知的所有權은 精神的所有權과 또는 無體所有權으로 불리우는 制度로서 그 區分은 工業所有權과 著作權으로 大別할 수 있다. 現在 美國에서 導入을 要求하는 部分은 知的所有權중 物質特許와 著作權 등으로서 특히 特許特許는 精密化學工業과는 가장 관련이 깊은 制度이고 우리

나라의 化學工業發展과 國民의 일상생활에 크게 影響을 줄 수 있는 工業所有權중 극히 중요한 部分이다. 그런데 物質特許는 先進國 大部分이 導入하고 있는 制度이고 化學工業이 發達되지 않은 나라는 先進國에 技術獨占을 당하는 不利한 制度라고 볼 수 있다. 또한 物質特許는 우리나라만 導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自國의 科學이나 產業技術의 水準에 따라 導入을 보류할 수 있는 制度이다.

問題인가

分析한다

의 수단으로 삼아 이 制度의 導入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어 早期導入說도 나돌고 있다.

이에따라 關聯業界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物質特許의 導入은 結果的으로 先進國技術의 예측화가 분명하고 발아기에 있는 國內 精密化學技術開發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여 이 制度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친 다음인 90年代 이후에나 導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物質特許導入! 무엇이 問題인가?
國際動向과 問題點을 集中 分析한다.

<編輯者 註>

特許制度의 存在意義

特許法은 發明을 獎勵함으로써 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하는 制度로서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일정기간 發明의 獨占을 認定하는 權利로 賦與하여 新技術의 發明과 開發을 獎勵 育成하는 法律로 要約할 수 있다.

特許法은 世界各國에서 거의 채용하고 있는 法律로서 內外國人의 平等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많은 나라에서 同一發明에 대해 特許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各國은 각각 獨自의인 特許法을 가지고 他國과 전혀 關係없이 法을 運用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 開發途上國을 中心으로 特許制度의

批判論이 일고 있으며 基本的으로는 特許制度를 是認하면서도 그 修正을 要求하고 있다. 그 理由는 特許制度 權利와 範圍에 따라 先願者保護가 지나치게 두텁고 先進國 中心이라는 것이다. 즉 特許制度는 開發途上國에서는 不利하고 主로 先進國에 유리한 制度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國際的 位置

우리나라는 그간 特許制度의 國際化에 대처하여 1980년에 先進國에서 施行하고 있는 特許公開制度, 審査請求制度, 特許請求範圍 多項制를 이미 導入 施行中에 있고 또한 世界 3大 特許國際協約도 1979년 WIPO (世界知的所有權機構), 1980년 파리協約, 1984년 PCT(特許協力條約)에 加入함으로써 國際的 位置가 向上 되었다. 그러나 國際協約도 先進國中心으로 制度化된 것이고 條約 目的도 先進國의 技術保護에 主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직도 많은 나라가 加入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特徵

現行 國內 特許法은 物質特許를 제외하면 發明의 保護가 完全하다고 볼 수 있다. 特許制度는 獨自的으로 白國 産業發展의 道具로 使用하며 비록 훌륭한 發明이라 하여도 그 發明을 保護하는 것이 도리어 國家産業發展을 阻害하거나 國益에 反하는 發明이 있음을 勘案하여 이와 같은 發明은 政策的으로 特許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一般화된 世界各國의 特許制度의 特徵이다.

우리나라도 大部分의 國家와 마찬가지로 特定 發明을 保護하는 것이 도리어 國家産業發展을 阻害하거나 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는 發明은 特

許保護對象에서 除外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物質特許가 포함된 特許法 第4條로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을 下記와 같이 記述하고 있다.

- 1) 飲食物 또는 嗜好物の 發明
- 2) 醫藥 또는 2以上の 醫藥을 混合하여 1의 醫藥을 調整하는 方法의 發明
- 3)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4)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5) 化學物質의 用途에 관한 發明
- 6)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紊亂케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念慮가 있는 發明

Ⅱ 物質特許의 得과 失 先進國엔 有利, 後進國엔 不利

고 있기 때문이다.

得과 失

物質特許는 化學工業과 가장 關聯이 깊은 制度로서 化學的方法으로 製造된 모든 物質 그 自體에 特許를 認定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不特許事由로 規定하여 特許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 理由는 앞서 說明했듯이 産業의 및 公益의인 側面에서 우리에게 絶對不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物質의 別개의 製造方法은 다른 나라와 같이 特許를 認定하고 있다.

또한 物質特許의 權利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강력하여 物質特許를 認定하면 그 物質의 生産, 使用, 販賣, 輸入을 獨占한다. 즉 物質特許는 化學物質+用途發明(飲食物, 醫藥, 農藥 등)+ 製造方法이 總括包含된 特許로서 他人이 새로운 製造方法을 發明했다 해도 物質特許權者의 許諾 없이는 그 物質을 製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手段에 의해서도 物質特許의 權利範圍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點에서 發明者의 權利가 完全하게 확보되는 側面에서는 좋은 制度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精密化學工業의 水準이 낮고 新規化合物을 發明할 程度의 技術水準이 이르지 못한 나라는 이 物質特許 만큼 피해를 주는 制度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新規化合物發明은 世界的으로 先進國에 의해 主로 獨占되

化學物質

化學物質이란 化學方法으로써 製造될 수 있는 物質 즉 原料物質(出發物質)에 化學變化가 뒤따르는 處理手段을 거쳐서 얻어지는 다른 物質(目的物質)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物質은 單一化合物(純粹物)이다.

化學物質發明은 多額의 研究費와 多數의 研究者의 協力으로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能力을 갖지 못한 나라에서 化學物質發明에 特許를 부여한다고 하면 化學物質發明의 大部分이 先進國에 의해 占有되어 그나라의 技術은 물론 製品까지도 先進國에 의존되므로 産業保護上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用途發明

用途發明은 化學物質自體를 發明의 直接的인 對象으로 하지 않고 그 物質이 使用되는 用途에 權利를 認定하는 制度이며 歷史적으로 用途發明을 인정하게 된 것은 DDT 特許 後이다.

最近의 物質特許는 化學物質自體 뿐만이 아니고 用途發明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理由는 最近新規化合物의 發明은 用途를 먼저 設定하고

新規化合物을 製造하기 때문에 用途를 무시한
 新規 化合物 發明自體로는 意義가 없다. 또한
 公知化合物의 경우에는 特定用途로 使用되는 化
 合物은 他目的의 轉用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問題點이 있으므로 用途發明은 慎重을 기할 必
 要가 있다.

飲食物이나 嗜好物

飲食物은 人體의 營養을 目的으로 攝取하는
 것을 말하며 嗜好物은 營養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味覺이나 嗅覺을 滿足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이 두가지는 人體用에 한하며 動物用은 포
 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國民의 日常生活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므로 만약 이것에 獨占權을 認定할때는
 그 價格이 不當하게 높아져서 日常生活이 위협
 을 받게 된다.

醫藥이나 그 混合方法

醫藥發明에 대해서 特許를 賦與치 않는 것은
 飲食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民生活의 직접적
 인 影響을 미치지 때문이다. 化學物質發明과 醫
 藥發明은 본래 별개의 것이지만 化學物質特許와
 醫藥特許는 用途發明으로 因하여 同時에 이루어
 진다.

Ⅲ 物質特許導入의 國際的 動向 中進國들 導入壓力에 시달려

世界各國의 物質特許政策

物質特許制度는 化學工業發展의 歷史가 깊은
 先進國에서 自國의 技術保護 및 販賣를 獨占하
 기 위해 만든 制度이다. 최근 中進國들은 自國
 의 技術 및 產業發展을 위해 導入壓力을 可能한
 지연시키고 있다.

世界各國의 導入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進國을 제외하고 物質特許를 導入한
 國家중 自發적으로 導入한 나라는 거의 없고 大
 部分이 先進國의 壓力에 의해 마지못해 導入한
 國家들이며 特히 特許制度의 概念自體도 定立되
 지 않은 後進國이 많다.

둘째) 先進國中에도 精密化學工業의 歷史가
 짧은 나라는 아직도 政策上 物質特許를 導入치
 않은 나라도 많다.

셋째) 이미 物質特許를 導入한 나라도 物質特
 許(飲食物, 醫藥, 化學物質, 用途發明)의 權利
 範圍에 대상물질을 한꺼번에 總括하여 導入한

나라는 거의 없고 比較的 自國에 失이 적은 部
 分만을 選定 導入하고 있다.

넷째) 物質特許를 導入했다가 自國의 化學工
 業發展의 遲延으로 物質特許制度를 廢止하는 國
 家도 있다.

物質特許導入國과 不導入國

가. 現 況

1984年 現在 世界獨立國家는 195個國이며 特
 許制度를 運用하고 있는 國家는 172個國에 達하
 고 파리協約 加盟國은 94個國이다. 物質特許를
 아직까지 採擇치 않는 나라는 化學物質特許 26
 個國, 醫藥特許 57個國, 用途特許(醫藥) 115個
 國에 이르고 있다.

나. 物質特許 導入國

物質特許를 導入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 네가

지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特許法制定當時 또는 오래전부터 導入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 프랑스 등이 있다.

둘째) 物質特許를 導入施行해 오다가 이를 廢止하고 얼마지나서 다시 導入한 나라는 英國 등이 있다.

셋째) 後進國으로서 自國의 精密 化學工業基盤이 全無함에도 불구하고 先進國의 壓力에 의해 物質特許를 導入한 나라는 아프리카 주변국 등이 있다.

넷째) 最近에 物質特許를 導入한 나라는 아일랜드(1964), 西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1968), 日本(1976), 스위스, 네델란드, 이태리(1978), 오스트리아(최근 검토중 곧 施行)이다.

다. 物質特許 不導入國

先進國과 後進國을 제외한 中進國들이 大部分 技術水準이 저조하며 向後 精密化學工業을 育成하려는 國家들로서 이들중 先進國으로부터 導入強要를 當하는 나라로서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韓國, 臺灣 등이 있다.

또한 先進國中 自國의 産業政策上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物質特許를 部分的으로 不認定하는 國家들은 오스트리아, 西獨(醫藥特許 不認定)덴마크, 아일랜드 등(飲食物特許 不認定)이 있다.

各國의 物質特許政策의 動向 分析

國 家 名	最 近 動 向
美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自國의 保護貿易強化를 理由로 GSP (一般特惠關稅制度)를 크게 擴大GSP 供與를 對象으로 中進國 및 開發途上國의 貿易協約에 物質特許認定 등을 要求 ○醫藥品에 關한 特許制度를 強化하여 醫藥品의 特許保護期間을 FDA承認에 消耗되는 期間만큼 延長한다는 法案 通過(5년까지 延長可能, 殘存特許期間+延長期間이 14年 超過不可)
英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特許法을 強化하여 新規性 外에 進歩性도 判斷 ○1919年 物質特許制度를 廢止했으나 30年後인 1949年에 再採擇 ○食品, 醫藥品에 關한 強制實施權 條項을 削除
카 나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醫藥, 食品特許不認定 ○醫藥特許는 販賣價의 約 4%에 該當하는 Royalty로 強制實施權 許與 ○醫藥特許는 他先進國母企業에서만 開發함으로 1976년부터 特許制度廢止論 또는 減縮論이 擡頭했으나 現在保留中
노르웨이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醫藥品은 製造方法만 認定 ○新物質開發經驗이 있으나 先進諸國에 比해 極小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物質特許는 記載된 用途에 限함 ○醫藥品用途發明 즉 醫藥特許不認定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C 加入國으로 物質特許에 關한 限 15年の 留保期間이 있으며 이 留保期間內에 物質特許 不認定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9年以後 어떤 醫藥特許도 不認定해 오다가 先進國의 壓力에 의하여 1979年 物質特許 導入
소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物質特許不認定 ○最近特許法改正으로 因하여 食物, 化粧品, 自體에 대하여 特許認定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年 特許法改正에 의하여 食品, 醫藥品, 農藥의 製造特許는 特許期間을 7年으로 短縮하고 다른 特許는 14年으로 延長 ○3年後 自動的으로 強制實施權을 許用하고 Royalty는 販賣價의 4% 以下로 認定
泰 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年 3월에 特許制度를 導入하였고 農藥特許는 可能하나 醫藥 및 食品特許는 不認定 ○自國에 特許가 登錄이 되고 國內에서 實施할 境遇 그 特許權은 輸入品에 미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英聯邦으로 英國法에 의해 特許되거나 政府는 適切한 보상 없이도 發明을 利用할 權利가 있음

■ 物質特許導入 무엇이 問題인가 ■

멕시코	○1976年 特許法改正으로 物質特許廢止 (카나다와 같이 美國의 醫藥品獨占으로 因해 自國産業에 利益이 되지 않아 廢止)
코스타리카	○1978年 5月 特許法改正으로 醫藥特許期間을 1年으로 短縮
브라질	○1969年特許法改正으로 物質特許廢止
아르헨티나	○醫藥特許不認定 ○2年間特許不實施는 特許無效
페루	○1979年 5月 特許法改正(南美모델法으로 注目) ○化學物質特許는 認定하나 醫藥特許는 不認定 ○特許期間은 5年이나 國內에서 特許를 實施할 경우 10년까지 延長 ○特許不實施의 경우 3年後에 強制實施權을 許與하며 公益上 必要한 特許는 언제든지 強制實施許與 ○모든 特許實施契約은 政府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Royalty는 政府가 定하며 技術導入者에게 不利한 어떤 條文도 削除可能
에콰도르	○醫藥特許를 認定했다가 特許法을 改正하여 不認定
가나	○物質特許를 認定했다가 1972年 醫藥特許는 不認定
중국	○現在까지 特許制度가 없었으나 7年前부터 世界各國에 人員을 派遣 特許法을 研究하여 最近特許法 草案作成 公表(1985. 4. 1 施行) ○物質特許自體는 不認定하고 製法特許만을 認定
말라카시	○1976年 모든 特許制度 廢止 ○새로 構想중인 特許法 草案에 依하면 醫藥特許는 可能하나 엄격한 強制實施權制度를 導入하고 特許期間은 10年으로 短縮, 다만 國內에서 實施한 경우에 延長可能

<Patents and pharmaceuticals(1980)>

物質特許導入의 各國事例

가. 스위스(모범국)

1983年 世界醫藥品市場은 857億弗이었으며 19

87년에는 1,080億弗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는 精密化學 특히 製藥工業을 일찍부터 發展시켰다. 적은 量의 石油化學 原料를 輸入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製藥工業을 成功的으로 이룩한 것은 스위스인의 예지라 할 수 있다.

化學工業을 發展시키려면 精密化學이 發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化學工業이 80%이고, 精密化學이 20%여서 均衡있는 化學工業發展이 안된 상태이나 스위스는 化學工業이 10%, 精密化學이 90%를 차지하여 世界的인 精密化學企業이 많은 國家이다. 따라서 스위스는 物質特許問題와 關聯 우리나라 精密化學 및 工業發展을 위해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나라이다.

스위스는 1978년에야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했으며 政策的으로 바젤市를 精密化學工業都市化하여 로슈, 시바가이키 및 산도즈社 등을 集中的으로 키워왔다. 그 結果 이들 3大製藥會社들의 1983年 賣上和 純利益은 시바가이키社는 賣上 58億弗에 純利益이 3億 850萬弗, 로슈社는 賣上 29億 8,000萬弗에 純利益이 1億 3,050萬弗 산도즈社는 賣上 26億弗에 純利益 1億 2,720萬弗로 그 賣上和 純利益이 대단하여 부존자원이 없는 스위스의 主要産業으로 國民經濟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醫藥品國內市場이 극히 적어 生産量의 94% 다시 말하면 거의 全量을 世界各國에 輸出하고 있다.

나. 이태리(실패국)

1) 世界속의 이태리 製藥工業의 特性

이태리는 일찌기 化學物質에 關련된 物質特許를 導入한 國家였으나 世界的으로 유일하게 1978년까지 醫藥品과 그 製造方法에 대해서 만든 特許를 認定하지 않은 國家였다. 그러다가 他先進國의 壓力에 의하여 1978年 3月 이태리 大法院의 判決에 의해 아무런 留保條項없이 EPC에만 加入하여 1979년에 醫藥特許를 導入한 國家가 되었다.

그러나 이태리는 우리나라 原料 醫藥品 供給에 莫大한 影響을 준 國家여서, 醫藥特許를 導入한 以後 이태리 製藥工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檢討함으로써 우리나라 物質特許導入檢討에 參考할 必要가 있다.

2) 醫藥特許導入後 製藥工業의 現況

이태리는 化學工業이 일찌기 發展되어 裝置産業인 基礎化學工業과 技術集約的인 精密化學工業이 均衡있게 發展하여 精密化學工業部門에서 世界最尖端의 技術을 保有하고 있었다. 이러한 背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는 先進國中 유일하게 醫藥品 및 그 製造方法을 認定하지 않음으로 因하여 他先進國의 技術을 그대로 模倣하여 先進國에서 開發된 醫藥品을 生産, 世界各國에 輸出함으로써 莫大한 外貨를 獲得하여 國家利益에 큰 貢獻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新藥物 COPY 製品을 輸出 他先進國의 新藥物開發會社에 큰 타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新藥物價格을 引下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여 國民保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3) 醫藥特許導入後 製藥工業의 動向

1978年 醫藥特許導入後 이태리의 世界的인 製藥會社가 指向해오던 新藥物의 復寫製品을 生産할 수 없게되자 企業經營에 資金압박을 받아 他先進國의 多國籍製藥會社에 合併을 당하거나 經營압박에 의해 門을 닫는 企業들이 속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物質特許導入 贊成者들은 이태리가 醫藥特許를 늦게 導入하여 失敗한 國家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이태리의 現實은 오히려 그 正反對現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태리가 1940년부터 1975年 사이에 新藥物開發이 5個品目도 안된다고 主張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1969年 6個, 1970年 9個, 1971年 12個, 1972年 6個등 계속하여 新藥物을 開發한 經驗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149個 品目的 新藥物을 開發하였다. 좀더 分析하면 이태리는 醫藥特許

를 導入한 1978年 以後부터는 오히려 新藥物開發 件數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事例를 볼 때 日本이나 이태리는 物質特許를 導入할 때 이미 國際競爭力을 充分히 갖춘후 導入했으나 그 結果는 日本은 事前에 充分한 研究檢討를 하여 導入했기 때문에 成功했고 이태리는 事前에 充分한 검토 없이 導入했다가 失敗한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醫藥工業은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醫藥原料合成의 歷史가 15年밖에 안되지만 1件의 新藥物質 開發의 餘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經驗을 쌓을만한 與件도 아니었다. 先進國은 우리나라 企業들을 溫室속의 企業이었기 때문에 競爭力이 없다고 하나 事實上 우리 製藥工業은 他 精密化學工業과 같이 政府의 政策的 배려로 별로 받지 못한 自生的 民族的 中小企業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은 아직까지 國際競爭力을 함양하지 못했고 世界主要製藥企業名單에 우리나라 製藥企業은 1個社도 包含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다.

다. 中共(最近의 導人事例)

中共은 特許制度를 1984年 3月 12日에야 採擇하였으며, 1年間의 豫備期間을 거쳐 發效될 豫定으로 있다.

中共의 特許法 誕生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의하여 中共特許法起草委員會가 1979年 3月 31日 構成됨으로써 始作되었다. 이 5年間 中共特許廳職員들은 廣範圍한 研究를 國內外에 걸쳐 수행 10個國에 調查團을 파견하고 30個國 以上의 特許法을 研究分析하였고 世界各機關으로부터 6회에 걸쳐 諮問을 받았다. 또한 特許法 宣布에 따라 中共은 이의 준비로 特許要員의 訓練을 위하여 自國은 물론 世界各國에서 訓練過程에 11,500名의 人員을 動員하였고 通信講座에도 4千名을 參與시켰다.

이와 같은 背景으로 立法화된 中共의 特許制度를 살펴보면 物質特許인 醫藥品, 飲食物 및 化學物質 및 用途發明 그리고 動物 및 植物등에

는 特許를 認定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物質들은 國民의 生活, 保健 그리고 精密化學工業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고 그 影響이 廣範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製造方法에 대해서는 特許를 認定하기로 하여 現行 우리나라의 特許法과 同一한 內容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 할 것은 中共에 特許制度를 導入하면서 物質特許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즉, 世界 先進國들이 中共의 特許法 制定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物質特許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強大國과 弱小國의 차이이며 힘의 政治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處해 있는 實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 日本(成功國)

1) 導入時 日本의 産業水準 및 技術開發現況

가) 우선 産業水準에 대해 살펴보면 日本은 1960年以後 産業技術의 눈부신 進歩와 急速한 發展을 이루었으며 物質特許와 關係가 깊은 精密化學工業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物質特許導入問題를 시기상조라 하던 1956年 當時의 技術開發水準을 現在의 우리나라와 比較하면 各별한 意味를 提示해주고 있다. 즉, 物質特許導入에 關聯된 日本의 化學工業은 1955年代에 石油化學工業을 비롯하여 飛躍的인 成長을 이룩하였고, 生産金額에 있어서는 美國 다음으로 世界 第 2位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化學工業發展은 技術進歩에 의한 것이 大部分으로 1955年 對外化學工業의 부가가치중 生産增加에 대한 技術進歩의 기여율은 72.3%였다. 製藥工業도 數年間 高度로 成長, 1970년에는 年間 1조엔의 生産高에 達하여 이것도 美國다음으로 世界 第 2位를 차지하였다. 其他 電子工業에 있어서도 1955年代부터 電子機器를 中心으로 急速히 發展, 1970년에는 生産額이 약 3兆 4千엔에 達하여 역시 美國 다음으로 世界 第 2位를 점하였다.

나) 技術開發능력에 대하여 研究者數, 研究開

發費에 대해 살펴보면 全體로는 거의 先進水準에 到達하였으나 美國과는 커다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技術輸出 受取額을 보면 物質特許와 關係가 있는 工業의 開發能力이 월등하며, 또한 物質特許에 있어서 가장 問題時되고 있는 新藥物開發능력도 現在 工業化되고 있는 것을 包含하여 特許出願面에서 보아도 世界最尖端에 있다. 製藥工業에 있어 OECD의 技術隔差報告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67年 사이에 世界에서 開發된 新藥物 138品目中 日本에서 開發된 것이 1品目밖에 없다고 報告했으나 自國에서 開發된 比率로는 日本이 24.7%, 美國이 67.5%, 西獨이 36.5%, 프랑스가 31.6%로서 日本이 第 4位로 되어있다.

한편 最近動向을 보면 自國의 開發比率는 30%로 上昇하고 있고, 또 1970년에 開發한 新藥物 42品目中 日本이 開發한 것이 12品目, 프랑스 8品目, 西獨 6品目, 美國 5品目 등으로 되어 있어 世界 第 1位를 차지하고 있다. 즉 日本이 開發한 新藥物은 總 157個品目に 이르며 이미 1969年 以前에 新規物質인 新藥物 22個品目を 開發한 經驗이 있다. 物質特許를 導入한 1976年 以前과 그 以後의 新藥物開發이 特別히 活潑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物質特許導入의 經緯

- 1950. 11 : 工業所有權制度 改正審議會에서 物質特許制度 檢討着手
- 1955. 3~7 : 物質特許導入與否에 對한 輿論調查實施(日本特許廳)
- 1956. 12 : 工業所有權制度 改定審議는 輿論調查結果 物質特許를 認定하지 않기로 하고 向後 化學技術進歩와 國際的 動向을 감안하여 檢討하기로 함
- 1958. 10 : 파리條約改定會議(리스본에서 開催)에서 各國은 國內法으로 化學物質의 保護를 檢討한 것을 決議 함.
- 1963~1965 : 特許廳을 비롯하여 日本特許

協會 등이 物質特許制度에 관하여 廣範圍하게 檢討함.

- 1969. 1 : 化學物質特許 合同研究會 設置.
- 1969. 7 : 醫藥特許 合同研究會 設置.
- 1970. 5 : 第63回 特別國會參議員 商工委員會는 1970年 特許法 改定時 物質特許에 대하여 成案할 것을 부대결의 함.
- 1970. 10 : 物質特許制度導入 贊反에 대한 앙케이트調查實施(日本 特許協會)
- 1971. 7 : 物質特許委員會 設置
- 1971. 11 : 歐美에 物質特許調查團 派遣(日本化學工業協會 및 日本 特許協會)
- 1972. 5 : 歐美에 物質特許에 대한 調查團 報告書發刊.
- 1973. 12 : 物質特許委員會는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할 것을 報告함.
- 1974. 1 : 工業所有權審議會制度 改定時에도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할 것을 報告함.
- 1974. 9 : 工業所有權審議會는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할 것을 通商産業省에 회신.
- 1975. 5 : 特許法 改正
- 1976. 1 : 特許法 施行

3) 物質特許導入에 관한 贊反意見

가) 反對意見

- ① 化學方法은 특정원료에 대한 公知方法의 選擇에 의의가 있으므로 物質自體에는 特許性이 없음.
- ② 化學技術의 水準이 낮고 新物質을 創製할 能力이 없으므로 優秀한 化學物質의 特許는 거의 外國人에게 歸屬하게 됨.
- ③ 化學物質의 特許를 認定하는 경우 強力한 獨占權을 획득하게 되므로 그 결과 實施料가 높아지고 製品價格이 올라갈 우려가 있음.
- ④ 化學物質特許가 거의 外國人에게 歸屬되는

狀態가 상당기간 계속되면 國內技術 및 産業振興에 重大한 沮害要因이 됨.

⑤ 醫藥特許를 認定하는 경우 의사등의 自由로운 진료나 조제행위를 沮害함.

나) 贊成意見

① 新規物質發明은 가장 基本的인 發明으로서 製造方法發明은 어디까지나 從屬的인 것임

② 製法特許에도 사실상 化學物質을 認定하는 것과 同一한 結果로 되는 것이 있었으나 종래 特別한 弊害는 認定되지 않았음.

③ 日本의 技術水準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고 研究施設이 充實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

④ 他人의 特許를 모방하는 安일한 研究에서 실제 技術進歩에 貢獻하는 基本的인 研究로 전환되어 化學技術의 進歩, 向上이 기대됨.

⑤ 化學物質特許가 認定되는 경우 例로서 방위출원을 위한 研究費가 삭감되는 등 經濟費가 경감되어 반드시 실시료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없음.

⑥ 일시적으로는 外國技術때문에 困難을 당하여도 그것이 轉換되어 國內技術振興의 基礎가 됨.

4) 物質特許導入에 관한 앙케이트結果

가) 第1次 앙케이트 調査

1955年 3月 日本 特許廳이 化學物質製造會社, 化學物質을 使用하는 會社, 大學, 研究所, 學會 등 1,352個所를 對象으로 앙케이트 調査를 하였다. 調査結果 化學物質은 반대 23.7%이나 여기에 時機常早를 합하면 反對가 51.9이고, 醫藥은 反對 43.5%에 時機常早를 합하면 55.2%였다. 醫藥調合은 反對 59.8이고 時機常早를 합하면 62.7%가 된다. 따라서 工業所有權制度 改正審議委員會는 輿論調查結果 結論的으로 時機常早라 判斷하여 物質特許導入을 하지 않기로 하고 向後化學技術進歩와 國際的 動向을 감안하여 檢討하기로 했다.

나) 第2次 앙케이트 調査

1970年 特許法改定時 부대결의에 呼應하여 日本 特許協會가 1970年 10月 會員社 335個社에

化學物質 및 醫藥特許導入에 關하여 앙케이트 調査를 實施한 結果 75.9%가 物質特許導入을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장 시행하지 않고, 1971년에 歐美에 物質特許 調査團을 派遣하였고 1975年 衆議院 本會議에 物質特許導入에 關한 特許法改正案을 議決하기까지 公聽會와 審議會를 무려 30回나 갖는 등 치밀한 準備作業을 遂行하여 1976年에야 비로서 物質特許制度를 導入實施하였다. 결국 日本은 物質特許導入을 檢討하여 實施하는데 무려 26年이 걸렸다. 즉, 日本은 物質特許導入前에 醫藥品工業에서 이미 新物質製造技術水準과 能力을 完全히 갖춘 후에 導入했다는 事實을 意味있게 檢討해야 할 것이다.

5) 日本의 製藥工業育成 事例

新藥物開發의 高度한 技術을 育成發展 시키기 위해 日本은 政府次元에서 비교적 經濟的인 方法으로 外國技術을 유치하게 하였다. 1967年 日本 厚生省에서 醫藥品의 製造承認에 關한 基本方針을 提示하고 新藥物開發에 必要한 基礎的인 動物에 對한 安全性, 毒性實驗등의 外國資料는 認定하지 않고 國內資料만을 認定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結果로 外國先進技術의 日本國

內 移轉을 促進시켰으며 1975年前만 해도 日本 政策은 外國會社의 醫藥品을 日本에서 生産하는 것을 禁止하고 단지 日本會社와의 合資會社나 Licensing 契約에 의해서만 外國製品的의 販賣가 可能하였다. 또한 1982年까지 日本 自國開發製 品이 外國製品보다 3% 더 利益金을 받게 한 日本 政策으로 因하여 오늘날 1百個의 世界巨大 製藥會社中 36個가 日本會社로 채워졌다.

여기에 또 1979年 日本은 新藥開發促進委員會를 設置하여 國際競爭力을 준비하는데 國家政策 및 民間會社와 大學教育團體 등에서 政策이 樹立되어 綜合的인 新藥開發育成政策으로 醫藥品의 價格, 新製品許可, 特許 등 重要問題에서 自國會社를 우선 保護育成하고 國際水準에 맞는 製품을 生産하여 輸出振興에 모든 努力을 기울였다.

오늘날 國際水準에 오른 日本은 1983年 以後 부터 美國 등 外國에 日本의 合作會社를 세우고 外國에 라이선싱하고 있다. 이것은 日本의 製藥 會社뿐만 아니라 重工業 등 企業에서 莫大한 資本으로 여건이 호조되고 이러한 經濟 및 社會的인 條件이 日本 自體가 큰 藥業市場으로 대두하게 되고 質的, 量的인 면에서 탈바꿈하게 된 要因이 되었다.

Ⅳ 物質特許導入에 따르는 問題點 精密化學工業 育成에 逆行結果 招來

國家的인 側面

첫째) 物質特許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나라는 精密化學工業發展이 完熟된 先進國들이며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의 實精으로 볼 때 物質特許 採擇으로 精密化學工業이 飛躍的인 發展을 가져 온다고 볼 수 없다.

둘째)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精密化學工業分野의 製品 및 技術이 先進

國 獨占下에 놓이게 되어 國內精密化學工業이 相當期間 계속 沮害原因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나라가 先進國의 販賣市場化가 될 우려가 있다.

셋째) 政府가 推進中인 重點育成産業인 精密化學工業育成에 逆行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精密化學工業 側面

現在 國內의 精密化學工業 技術開發水準은 新 物質의 開發이 不可한 與件下에 있으며 아직도

先進技術의 消化, 改良에 있음을 누차 言及하였다. 우리나라의 先進技術 國內導入類型은 大略 다음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

첫째) Original 開發社의 license에 의한 開發
둘째) Original 開發社의 國內 直接投資(合作會社)에 의한 開發

셋째) Non-Original의 第3國으로부터의 低價의 原料 또는 技術導入에 의한 開發

넷째) 國內 企業自體의 先進技術 消化·應用·改良開發

다섯째) 國內 專門研究機關과의 研究用役依賴 또는 共同開發 따라서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한 境遇에는 上記 첫째와 둘째를 除外하면 新物質의 開發은 거의 不可能하고 現實的으로 全般的인 國內 技術向上을 期待하기는 매우 어렵다.

最近 外資開放政策에 의해 外國企業의 國內進出이 急速히 늘고 特許出願件數도 增加하고는 있지만 實際로 이들은 製劑化技術이나 QC, 마케팅 經營技術移轉에 치우치고 原料生産에 必要한 尖端技術의 國內導入(노우하우 提供 등)을 意圖的으로 回避 또는 遲延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特許登錄은 實際的 使用보다는 模倣防止用目的의 性格을 띠고 있어 國內精密化學工業發展은 踏步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다.

企業의인 側面

첫째) 國內精密化學會社의 實情은 영세규모로서 多額의 研究投資가 不可하고 危險負擔性이 높아 新規物質의 開發은 現在 不可能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精密化學工業技術은 아직 先進技術에 比하여 초기 단계에 있고, 研究組織, 研究員 및 研究能力이 不足하여 先進技術의 模倣도 未洽한 實情이다.

셋째) 物質特許를 認定하게 되면 外國先進企業에 의한 強力한 獨占結果가 초래되어 醫藥品 등과 같은 多品目을 國內産業化할 경우 높은 實施料要求가 불가피하고 價格이 高價로 形成, 國民生活에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넷째) 精密化學會社의 立場에서 보면 資本,

研究所, 高級人力確保등 劃期的인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이웃 日本의 例를 들면 物質特許制度 導入의 問題를 約 26年間 研究檢討하였고 그 기간내에 精密化學工業發展을 성숙시킨 後 1976년에야 採擇 實施하였다. 그 當時 日本內 企業들은 新規物質 發明이 可能하였고 또한 物質特許 導入을 93.3%以上 贊成하였으며 化學物質特許는 거의 모두 贊成하였다.

特許出願 登錄側面

첫째) 物質特許導入檢討에 있어 技術開發能力 指數의 한 部分으로 볼 수 있는 特許出願·登錄 面에 보면 內國人과 外國人の 特許出願 件數比는 約 1:3이며 特許登錄件數比는 約 1: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아직 技術開發에서 競爭이 되지 않는다.

둘째) 物質特許와 관련된 化學關聯特許는 全體登錄件數中 26.3~62.3%의 높은 比重을 主導하고 있으나 內國 製藥關聯 特許登錄은 年間 12~25件으로 全體 特許登錄件數 對比 1.0%, 化學·製藥關聯 特許登錄件數 對比 1.5~3.4%로 極히 적은 實情을 보이고 있다.

셋째) 最近 5年間(1979~1983) 製藥關聯 內·外國人の 特許登錄件數를 보면 外國人인 경우 上位 10個社가 總 885件인데 比하여 內國人은 89件으로 10%정도에 불과하다.

넷째) 1984年 特許登錄 總件數는 2,365件이며 其中 外國人の 登錄件數는 2,068件으로 國內特許登錄은 外國인에 의해 左右되고 있다.

다섯째) 特許出願動向을 '83年度 公開特許에 의하여 살펴보면 外國人 10個社가 623件임에 比하여 內國人은 34건 밖에 안되어 아직 國內研究開發이 初步 段階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內國人의 特許內容을 分析하면 新規 物質創製는 없으며, 公知技術의 模倣段階에 머물고 있고 特許性이 있는 核心工程開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따라서 物質特許導入時 內國人의 製

法特許登錄 상황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精密化學工業製品은 外國人에 의해 獨占될 것이 明若燭火한 일로 判斷되고 있다

外國人의 特許實施 側面

첫째) 物質特許는 주로 多國籍企業에서 獨占하고 있으며 特許의 技術比較 優位가 절대적으로 높을 때는 生産製品의 貿易을 통해 汎世界的인 利益의 극대화 戰略을 취하고 있다.

둘째) 特許 技術의 比較優位가 잠식당하거나 生産製品에 대한 輸入制限 또는 關稅率 등으로 인하여 市場擴大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直接投資方式에 의한 技術 및 資本의 移轉을 통하여 利益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外國人 特許가 國內에서 實施되고 있는 現況을 分析하면 外國特許가 登錄된 것을 實施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고 現在 外國會社가 國內原料를 生産하는 경우는 몇 종류 원료에 불과하다.

넷째) 또한 外國人이 國內에서 實施하는 技術은 汎用화된 技術들로서 最尖端의 技術을 實施한 것은 1件도 없고 더구나 特許登錄된 製品은 全部가 國內에서 生産하지 않고 原料供給에 그치고 있다.

다섯째) 特許法의 強制實施權으로 인해 實施한 特許는 1件이 있으나 生産된바는 없다.

現行特許制度 側面

現行 特許制度下에서는 先進技術의 消化 改良 및 應用技術의 迅速한 開發이 可能하여 開發社로 하여금 國內市場競爭을 위한 尖端技術을 加速化시킬 수 있으며 보다 나은 製造方法을 開發하기 위한 技術的 競爭은 가장 迅速한 技術振興策이 될 수 있다.

첫째) 基礎精密化學分野의 發展促進效果

現 與件上 技術開發活動이 가장 活性化될 수 있는 製造特許制度에서는 多角的인 研究開發活

動으로 인하여 精密化學 關聯周邊産業의 發展을 促進할 수 있으나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少數 外國企業이 新物質開發을 獨占하여 國內精密化學이 萎縮되며 그 餘波에 의해 關聯 基礎精密化學工業의 發展에 直接的이고 否定的인 波及 效果가 憂慮된다.

둘째) 外貨節約 效果

新製品의 市場 占有率이 漸次 높아지고 이들 新製品이 大部分 特許權으로 保護되고 있는 事實에 비추어 볼 때 物質特許制度下에서는 外國開發企業으로부터 高價로 原料를 購入해야만 하며, Royalty, 또는 原·副資材 購入의 強요等에 의하여 莫大한 外貨가 지불된다.

그러나 製法特許制度하에서는 國內企業의 技術開發로 新物質開發이 活性化되면 莫大한 外貨를 節約할 수 있는 것이며, 國際貿易 收支改善을 위한 政府施策에도 積極 呼應하는 것이다.

셋째) 原料價格 節減

先進外國企業들의 新物質開發에 所要되는 研究費는 急速히 上昇하고 있는 反面 成功率은 相對적으로 低調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研究費에 對한 보상을 얻기가 困難하므로 製造原價에 研究開發費의 比率이 크게 反映되는 同時에 技術移轉을 境遇도 高價의 Royalty를 要求할 것이므로 相對적으로 國內 新物質價格의 高價化를 甘受하지 않을 수 없다. 製造方法特許의 境遇 國內企業의 改良技術開發 또는 Non-Original인 低價 品目의 國內導入 可能性을 열어둠으로써 市場獨占의 抑制 내지는 善意의 競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全體적으로 精密化學製品의 適切한 價格水準 維持로 直接的인 原料價格 節減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外國 Original 製品價格水準은 調查結果 極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參考文獻>

韓國精密化學工業振興會刊「우리나라의 精密化學工業과 特許制度」